

의안번호	2204831
의 퇴 인	김대식 의원
회 답 일	2024.11.13.
추계번호	24C4457
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,500만원(연평균 3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(안 제4조)	33	33	33	33	33	165	3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)	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-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- 제8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-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-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 - 제11조에 따른 자율 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- 제16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한 사항 - 제17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- 제21조에 따른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9.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	
2	안 제6조 (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한국사학진흥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2.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3. 제9조에 따른 구조개선 이행실적 점검 4. 제12조에 따른 경영자문의 제공 및 지원 5. 제19조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교대학에 대한 청산 지원 6.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(제3항) 전담기관의 임·직원이나 그 직(職)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제4항)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3	안 제7조 (재정진단의 실시)	(제1항)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(이하 “재정진단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제9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수행할 수 있다. (제3항)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(제4항)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,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4	안 제12조 (경영자문)	(제1항)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전담기관에 의한 경영자문을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(제2항)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·변경하여야 한다. (제3항)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,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5	안 제17조 (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)	(제2항)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,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(補填)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	재량규정
		(제3항) 제2항에 따른 해산장려금의 범위, 한도와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제4항) 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6조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.	의무규정
6	안 제18조 (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)	(제1항) 국가는 제16조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(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교명령 받은 대학의 소속 학생을 포함한다)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제5항) 국가는 폐교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「학술진흥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등에 의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참여에 대하여 차별·제한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7	안 제20조 (해산·청산의 지원)	(제1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: 구조개선명령 시 2.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: 해산 인가의 신청 시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(제2항) 전담기관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
8	안 제21조 (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른 폐교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대학의 소재 지역을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(이하 “특별지원지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자금·융자 등 금융·재정 지원 2.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·기술·회계 관련 자문 3. 지역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 4.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	재량규정
		(제3항) 그 밖에 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간,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9	안 제22조 (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	(제1항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·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10	안 제23조(벌칙)	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의무규정
11	안 제24조(과태료)	(제1항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.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개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선이행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.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. 제9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5.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(제2항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 (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)	○	
2	안 제6조 (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)	×	· 제정안에 따른 전담기관을 운영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·경상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안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현시점에서 필요한 전담인력의 수와 운영비 단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¹⁾²⁾
3	안 제7조 (재정진단의 실시)	×	· 제정안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경영자문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음 · 2024년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지원 받아 사립대학에 대한 “재정진단(485백만원)³⁾”과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경영자문(4,810백만원)⁴⁾ 지원중이므로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관련 절차가 현행제도와 유사하게 규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· 다만, 제정안의 제안이유⁵⁾ 등을 고려할 때,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확대 또는 신규사업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
4	안 제12조 (경영자문)	×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5	안 제17조 (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)	×	· 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잔여 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등에는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해당 재원이 국가의 재정일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· 다만, 해산장려금의 한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현시점에서 해산될 학교법인의 수와 그 잔여재산 규모, 잔여재산 중 사학진흥기금으로 귀속될 부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6	안 제18조 (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)	×	· 현시점에서 국가에 의하여 실시될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이에 소요될 재정소요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7	안 제20조 (해산·청산의 지원)	×	(제1항) 현시점에서 해산될 학교법인 수와 기본재산의 규모 및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입될 재산의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필요한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곤란
		×	(제2항)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을 '24년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실시 중이나, 제정안의 제안이유 등을 고려할 때,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확대되거나 또는 신규사업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다만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 · 참고로, 교육부 소관 사업 중 “폐교대학 청산지원용자”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등 채무변제금을 용자지원하는 사업으로, '24년도에 4,45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됨
8	안 제21조 (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)		· 현시점에서 폐교대학이 소재할 지역 및 해당 지역에 대하여 실시될 자금·금융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어려워 소요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9	안 제22조 (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	×	· 제정안의 구조개선 조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은 조례를 통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증가분을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기 곤란

- 1) 제정안에는 전담기관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①안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주체가 교육부장관이고, ②전담기관의 업무로 “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”가 규정되어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전담기관의 구조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전제함
- 2) 다만, 안 제6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전담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하며, 전담기관의 업무 중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비는 후술할 각 근거 규정에서 비용추계 여부나 추계 금액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것으로 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0	안 제23조(벌칙) 안 제24조(과태료)	×	· 제정안에 따라 구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, 이행계획을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· 다만, 현시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수 및 그 금액 등을 예상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가재정소요의 산출이 곤란하여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항을 제외하고, 본 추계에서는 ‘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’(안 제4조)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-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,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제정안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전담기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, 이때의 전담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동 위원회 운영에 소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 - 제정안은 위원회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를 위해 위원 정수는 최대 정수인 12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“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” 1명을 제외한 11명이 수당 지급 대상 위원인 것으로 가정
 - － 「2024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」에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참석비의 경우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은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정

-
- 3) 사립대학 대상 재정진단 수행 및 진단 보완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,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됨
 - 4)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경영자문(30개교)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경영자문 지원 전문용역비와 운영비로 구성됨
 - 5) (...)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,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,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(이하 생략)

- 회의 횟수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심의 대상 및 내용에 유사성이 있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실적을 참고하여 연 12회(월 1회)로 가정
 - 제정안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재정진단, 경영위기대학 지정·해제 및 구조개선 명령, 폐교·해산의 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,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경우 대학 설립 기준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립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심의 내용상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의 회의 횟수를 준용
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」 6)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경우 총 8회,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, 이를 참고하여 제정안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연간 회의 횟수를 12회(월 1회)로 가정
- 수당 단가의 경우 「2024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」 7)에는 명시적인 금액이 없으나, 해당 지침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 8)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5만원으로 하고, 해당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위원회 참석비, 장시간 회의에 따른 추가비용, 회의안건 검토비용 등을 고려한

6) 대학설립심사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현황(2023년 6월 기준)

명칭	대학설립심사위원회	사학분쟁조정위원회
소속 및 성격	교육부 자문위원회	교육부 자문위원회
설치근거	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3조제1항	「사립학교법」 제24조의2
기능	대학 설립 기준, 대학 통폐합에 관한 사항 심의	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·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항(정상화추진실적 평가, 정상화 추진계획안) 심의
위원	총 10명(위촉직 10명)	총 11명(위촉직 11명)
회의 개최실적	출석 8회	출석 10회

주: 회의 개최실적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실적임

자료: 2023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(행정안전부)

7) 「2024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」

- ☐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(작성 세부 지침을 포함한다)」,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8)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

- ☐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 내로 편성
- ☐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금액이며, 해당 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,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은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에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 하며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,500만원으로 추계(연평균 3,300만원)

○ 2026~2030년 연간 :

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(11명) × 연간 회의 횟수(12회) × 수당 단가(25만원)

[표 2]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(안 제4조)	33	33	33	33	33	165	3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